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5
----------	------

발의연월일 : 2016. 8. 29.

발의자 : 안규백 · 김해영 · 문희상

이찬열 · 이춘석 · 윤호중

이동섭 · 김경협 · 원혜영

김정우 · 전혜숙 · 김진표

고용진 · 윤관석 의원(14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회를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교육감·교육위원”을 “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2조(신고의무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u>교육감</u> · <u>교육위원</u> 및 교육장	8.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